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 시설의 급여 및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식사재료비 1식 3,800원, 간식비 일일 1,500원 산정
 - ② 병원 진찰료, 약제비, 기타 개인 비급여 물품 비용별도 청구
 - ③ 시설(입소)급여는 본인부담율 20%, 12%, 8% 에 따라 산정한다.
3.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어르신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요양원 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의 경우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는 일시금 선납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정산은 퇴소 시 결정한다.
6. 입소어르신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이용료를 3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퇴소를 요구할 수 있다.
7. 월 이용료 납입지연 또는 불납입으로 입소어르신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타 시설로 전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간단 또는 일부분),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를 위한 활동 지원
2.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리 등), 개인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부축 등),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활동 지원,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20%를 받고,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및 경감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8%, 12%를 청구하고, 나머지 92%, 88%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구 분	기 준	비 고
장기요양보험	80%~10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기준에 따라 80%~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20%	보험공단이 80%이고 개인 부담금이 20%
	12%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8%, 12%
	8%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③ 입소비용은 장기요양급여수가의 법정본인부담금비율의 비용으로 산출되며, 1일 제공되는 3식 및 1회 간식 등 식재료비의 비급여 비용으로 구분되며, 이외의 의료비, 건강검진비 및 약제비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식재료비 비급여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으며, 시군구의 매년 책정되는 보장시설 생계비를 청구하여 수납한다. 단, 입소자 중 등급외자(장기요양보험이전 입소자)에 대한 입소비용 수납은 1등급 수가를 기준으로 지자체에 청구하여 수납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3년도	2,063,400원	1,914,600원	1,764,900원	1,764,900원	1,764,900원

구 분		1등급(원)	2등급(원)	3-5등급(원)
1일 장기요양비용수가		68,780	63,820	58,830
일반 20% 부담(30일 기준)		(20%) 412,680	(20%) 382,920	(20%) 352,980
경감대상자 8%,12% 부담(30일 기준)		(12%) 247,600	(12%) 229,750	(12%) 211,780
		(8%) 165,070	(8%) 211,780	(8%) 141,19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0% 부담		0	0	0
비급여 (식재료비)	일반, 경감대상	342,000	342,000	342,000
	간식비	45,000	45,000	45,000

제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 입소어르신(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했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입소어르신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이하 "병"이라 칭함)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 방법 : 입소보호의 경우에 요양원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에 임한다.

- 입소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입소어르신이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4조 (상담 및 의견 건의)

1. 입소 어르신은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2. 입소 어르신은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3. 입소 어르신은 요양원 내의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4.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의 요양원 생활과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 할 수 있다.
5. 시설장은 입소 어르신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요양원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6. 시설장은 입소 어르신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입소 어르신 사생활 보호 및 존엄성 존중) 입소어르신의 사생활 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수급자 사생활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6조 (간담회) 요양원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소 어르신 간담회와 보호자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정보를 가지고 어르신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조 (입소 어르신의 사고 및 질병)

1.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의 사고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입소 어르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해당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입소 어르신의 사고에 대해서는 요양원 측은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
4. 입소 어르신이 의료적인 치료가 요구되어질 경우 요양원은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부재나 연락 두절인 경우는 통화 시도 시간을 기록하고 추후 통화 때 통보토록 한다.
5. 입소 어르신에게 치료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호자는 치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경비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입소 어르신 보호자가 5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은 입소 어르신을 퇴소 조치할 수 있다.
7. 요양원 측은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려할 권리 보장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얻도록 해야 한다.
8. 요양원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9. 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는 요양원의 보호 원칙 및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입소 어르신의 외출 및 외박)

1. 입소 어르신의 외출 . 외박은 원칙적으로 주 보호자의 결정에 의해서 실시한다.
2. 입소 어르신은 외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외출 기록부 작성 담당 간호사 및 요양원 업무 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승인을 얻은 후 외출하여야 한다.
3. 입소 어르신이 외출 및 외박 시간을 초과하여야 할 경우 요양원에 통보해야 한다.
4. 입소 어르신이 외출 및 외박 시간을 초과하고도 통보치 않을 경우는 무단 외출로 간주한다.
5. 요양원 직원이 동행하는 입소 어르신의 외출 및 외박은 직원의 출장 보고로 같음할 수 있다.
6. 보호자가 동행하는 입소 어르신의 외출 및 외박은 보호자가 외출 . 외박 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7. 시설장은 입소 어르신의 원내 적응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외출과 외박을 불허할 수 있다.

제9조 (입소 어르신의 무단 외출 및 이탈)

1. 입소 어르신의 무단 외출, 이탈로 인한 모든 사고와 불이익은 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입소 어르신의 무단 외출 및 이탈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자에 대해 시설장은 퇴소를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 (입소 어르신의 폭행 및 폭언)

1. 입소 어르신이 다른 입소 어르신에 대해 폭행 또는 폭언을 했을 경우에는 가해 입소 어르신 및 가족은 그에 따른 치료 보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직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하는 입소 어르신은 그 행위가 중할 경우 퇴소를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입소 어르신 재활 및 자립 프로그램의 성실 참여 의무)

1. 입소 어르신은 재활 및 잔존 능력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2. 입소 어르신은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활 및 잔존 능력 유지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으로 장기요양표준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① 일상생활지원 및 위생관리서비스
 - ② 식사 및 간식서비스
 - ③ 의료지원 및 연계서비스
 - ④ 전문간호서비스
 - ⑤ 물리치료서비스
 - ⑥ 상담서비스
 - ⑦ 정서지원서비스
3.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요양원과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요양원 내에서 요양원 규칙이나 요양원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요양원 운영 또는 타 입소어르신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9.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파손.멸실 하였을 경우

제14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5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이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신체구속지침서와 노인 학대 예방지침서에 준하여 실행한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④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 ⑤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별 진료일지 및 업무일지에 그 사항을 기록한다.
 -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계약의사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계약의사의 활동사항

- ① 시설의 장은 지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계약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 ② 시설의 장은 계약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협회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정된 계약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4.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요양원에서는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과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주 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④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5.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① 가벼운 질병 등(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부담한다.
- ②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함께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17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 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① 요양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어르신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요양원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② 입소어르신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③ 입소어르신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④ 입소어르신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18조 (퇴소 및 전원)

1. "을"은 본 규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의 소정의 퇴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입소어르신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해 가지 않을 경우에는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과 "병"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3. "을"은 "갑"이 퇴거 시 선불 및 보증금(해당시설 및 해당자) 등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4. "갑" 또는 "병"이 퇴소나 전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을"은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사망)

1. 사망자 처리에 대하여 시설장은 관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요양원은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장례 절차는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 뜻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무연고자인 경우는 요양원에서 결정하며, 입소 어르신의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4. 입소 어르신의 사망의 직접 원인이 직원의 과실이나 현저한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시설장은 해당 직원을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해야 한다.

제20조 (건강진단) 입소어르신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2. 종사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에 의한다.
3.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1조 (위생관리)

1.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2.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소독한다.
3.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구서에 만전을 기한다.
4. 침구와 의류는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소독 등을 실시한다.
5. 침상 식사제공을 지양하며 일정장소에서 동시에 식사를 하며 주간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다만, 특식 프로그램 진행시에는 예외로 장소를 정할 수 있다.

제22조 (생활지도)

1. 요양원의 모든 종사자는 입소어르신이나 이용자의 생활조력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2. 요양원내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3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본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원에서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 장 생활 지원, 위생, 의료, 문화 서비스

제24조 (입소 전 상담) 시설에 입소하시기를 원하는 어르신은 입소 면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입소면접을 통해서 시설에서의 생활을 위한 자세한 안내와 시설을 견학할 권리를 가진다.
2. 본인의 과거력에 관한 상담과 현재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특성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 거짓이 있거나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원내에서 발생하는 어르신의 불미스런 행동에 대해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25조 (입소 시 지참물) 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은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물품을 지참할 권리를 가진다.

1. 입소 시 본인이 사용하던 피복, 생필품, 침구류 등은 각방 사물함에 보관할 수 있다.
2. 입소 시 지참물 중 별도 보관을 원하는 물품은 따로 준비된 개인보관함에 보관 할 수 있다.
3. 다만, 가구 및 가전제품의 지참은 본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따로 정한 물품규정에 따른다.

제26조 (숙소배정)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해 숙소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숙소배정은 시설장의 권한이다.)

1. 남녀분리에 의한 배정
2.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한 배정
3. 연령을 고려한 배정
4. 기타 입소어르신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배정

제27조 (외출 . 외박) 모든 어르신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외출 . 외박 권리를 가진다.

1. 본인의 건강상태 및 보호자의 동행
2. 외출의 목적과 목적지 및 귀원 시간의 고지
3. 외박의 목적과 목적지, 연락처, 귀원일시의 고지
4. 외박 시 보호자 고지

제28조 (면회) 모든 어르신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면회할 권리를 가진다.

1. 면회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한다.
2. 면회자는 타 어르신의 편의를 고려하여 어르신의 숙소에서 숙박할 수 없다.
3. 음식물 반입 시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면회종료와 함께 남은 음식물은 모두 가져간다.
4. 보다 체계적인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약물의 반입은 금한다.

제29조(금품의 보관과 활용) 모든 어르신은 금품의 보관과 활용에 있어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입소 당시 소지한 금전이나 입소 후 연고자나 특정인의 후원금 및 각종 수당은 해당 노인의 명의로 예금 또는 보관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2.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금전의 보관과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은 담당직원에게 대리할 수 있으며,

담당직원으로부터 입금, 출금 및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0조 (식사) 모든 어르신은 식사와 관련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영양과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2. **식사시간은 조식 07:00, 중식 12:00, 석식 17:00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실 수 있으며, 사정상 식사시간을 지키시지 못한 경우라도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침실에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나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침실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건강상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어르신은 의료 . 재활팀과 협의하여 대체 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31조 (간식) 모든 어르신은 다음의 간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영양과 본인의 건강을 고려한 간식을 매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간식과 음식물 섭취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 (시설이용) 모든 어르신은 사무실에 고지한 후에 정해진 시간 안에서 시설 및 부대설비를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33조 (강제노역 금지) 모든 어르신은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청소, 설거지, 음식준비 등의 노역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34조 (위생) 모든 어르신은 위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주 1회 이상 개인 위생관련 서비스와 월 1회 이상 이발 또는 미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어르신은 상태에 따라 기저귀교체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어르신은 필요에 따라 숙소 및 부대시설의 정리, 청소, 소독 등 공중위생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35조 (목욕) 모든 어르신은 목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주 1회 이상 정기 목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목욕 시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정기 목욕 외에도 필요에 따라 목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모든 어르신은 시설의 목욕실 및 부대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36조 (세탁) 모든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세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인의 피복 및 침구류 의 세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필요에 따라 세탁실 및 부속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3. 피복 및 침구류 등의 세탁은 물론이거니와 일광소독 등의 부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37조 (의료) 모든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년 1회 이상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 매일 간호(조무)사의 회진을 받을 수 있다.
3. 월 2회 이상 협력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4. 건강상태에 따라 투약,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5. 병원 입원 시 상태에 따라 간병인의 간병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용발생 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38조 (종교생활) 모든 어르신은 종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모든 어르신은 본인이 원하는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2. 모든 어르신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종교생활을 강요받지 않는다.

제39조 (환경정비 등) 입소시설을 항상 쾌적한 환경과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으로 시설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 수시 점검 정비하여야 한다.
2. 건물 내·외부의 도색은 필요시마다 한다.
3. 거실의 도배장판은 청결을 유지하여 필요시 수시 정비하고 하절기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월동 대책을 수립 동절기에는 난방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 만전을 기한다.

제40조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장은 집단 수용 시설에서 예측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의 미연의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소어르신 및 직원에 대한 계절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2. 보일러 시설 안전 점검 실시 (수시)
3. 승강기 시설 안전 점검 실시
3. 차량 정비 점검 등 각종 시설물 및 물품 관리 철저
4.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 연락체계, 자체소방 팀 설치 운영 등

제41조 (사업의 실시)

1. 입소어르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2. 입소어르신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어르신과 면담하거나 관찰 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경우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전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직원은 직위에 맞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입소어르신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입소어르신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어르신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 (퇴소) 모든 어르신은 퇴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퇴소할 수 있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적절한 퇴소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본인이 퇴소를 원할 경우 친절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43조 (전원) 모든 어르신은 전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본인이 전원을 원하는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전원 할 수 있다.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적절한 전원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본인이 전원을 원할 경우 친절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44조 (개인정보보호) 모든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적법한 사항 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45조 (사생활보장) 모든 어르신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46조 (권리의 규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어르신들의 권리를 규제할 수 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르신의 권리를 규제할 수 있다.
 - 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② 시설의 설립취지와 운영방침에 위배되는 경우
 - ③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④ 본인이 치매, 정신지체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경우
 - ⑤ 사회 통념상의 도덕과 상식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경우
 - ⑥ 본인의 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
2. 시설의 합법적인, 정상적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어르신이 관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되어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